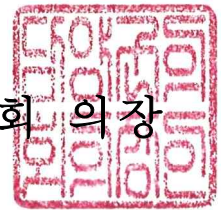


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. 3. 10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「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」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원의 구속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제한을 마련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출장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(안 제4조2)
- 나. 여비 부담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(안 제7조2)
- 다.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의 항공운임을 실비로 변경(별표 3)

구 분	항 공 운 임	
	현 행	개 정 안
의 장, 부 의 장	1등 정액	실비(1등석)
의 원	2등 정액	실비(2등석)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3. 3. 10.~3. 16.(7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 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개정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조례안	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3년 3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·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·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4조의2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)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속상태에 있는 경우 3개월 이내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40퍼센트, 3개월 이후는 20퍼센트를 지급한다. 다만, 의원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.

② 「지방자치법」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. 다만, 각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5퍼센트를 지급한다.

1.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「지방자치법」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
2.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

3.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
제7조의2(여비 부담 수령시 가산 징수) ① 의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
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(還收)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
가산하여 징수한다.

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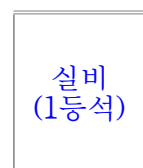
1.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
2.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

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, 가산
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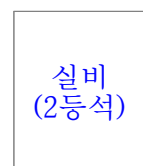
제9조 중 “**담양군 공무원의 예**”를 “「**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
례**」”로 한다.

별표 3 중 “**(제8조 제2항 관련)**”을 “**(제7조 제2항 관련)**”으로 한다.

별표 3의 의 장 부의장의 항공 운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

별표 3의 의원의 항공 운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의정활동비 지급) ①·② (생략) ③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 항과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다. 다만, 의원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를 소 급하여 지급한다. <신설>	제2조(의정활동비 지급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삭제> 제4조의2(의정활동비 등 지급제 한)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속상태에 있는 경우 3개월 이 내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40퍼센트, 3개월 이후는 20퍼센 트를 지급한다. 다만, 의원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 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 여 지급한다. ② 「지방자치법」 제100조제1 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 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

<신 설>

당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. 다만, 각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5퍼센트를 지급한다.

1.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「지방자치법」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

2.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

3.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

제7조의2(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) ① 의원이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(還收)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.

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수령한

제9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<u>의원의 여비 지 급에 관하여는 <u>담양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.</u></u>	<u>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 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</u> <u>2.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</u> <u>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 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 며,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 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.</u> 제9조(준용) ----- ----- ---- 「<u>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</u>」-----.
---	---

별표 신·구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 3] <개정 2021.2.19.> <u>국외여비 지급기준표</u>(제8조 제2항 관련) (단위 : 미불화) 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rowspan="2">항공운임</th><th rowspan="2">일비</th><th colspan="3">숙박비(1야) 및 식비(1일)</th><th colspan="3">준비금</th></tr><tr><th>등급</th><th>숙박비</th><th>식비</th><th>15일미만</th><th>15일이상 30일미만</th><th>30일이상</th></tr><tr><td>의장 부의장</td><td>1등정액</td><td>35</td><td>가 나 다 라</td><td>166 120 92 79</td><td>107 78 58 49</td><td>150</td><td>170</td><td>195</td></tr><tr><td>의원</td><td>2등정액</td><td>30</td><td>가 나 다 라</td><td>145 95 70 62</td><td>81 59 44 37</td><td>130</td><td>155</td><td>180</td></tr></table> 비고 국가 및 도시별 등급기준은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기준에 따른다.	구분	항공운임	일비	숙박비(1야) 및 식비(1일)			준비금			등급	숙박비	식비	15일미만	15일이상 30일미만	30일이상	의장 부의장	1등정액	35	가 나 다 라	166 120 92 79	107 78 58 49	150	170	195	의원	2등정액	30	가 나 다 라	145 95 70 62	81 59 44 37	130	155	180	[별표 3] <u>국외여비 지급기준표</u>(제7조 제2항 관련) (단위 : 미불화) 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rowspan="2">항공운임</th><th rowspan="2">일비</th><th colspan="3">숙박비(1야) 및 식비(1일)</th><th colspan="3">준비금</th></tr><tr><th>등급</th><th>숙박비</th><th>식비</th><th>15일미만</th><th>15일이상 30일미만</th><th>30일이상</th></tr><tr><td>의장 부의장</td><td>실비 (1등석)</td><td>35</td><td>가 나 다 라</td><td>166 120 92 79</td><td>107 78 58 49</td><td>150</td><td>170</td><td>195</td></tr><tr><td>의원</td><td>실비 (2등석)</td><td>30</td><td>가 나 다 라</td><td>145 95 70 62</td><td>81 59 44 37</td><td>130</td><td>155</td><td>180</td></tr></table> 비고 국가 및 도시별 등급기준은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기준에 따른다.	구분	항공운임	일비	숙박비(1야) 및 식비(1일)			준비금			등급	숙박비	식비	15일미만	15일이상 30일미만	30일이상	의장 부의장	실비 (1등석)	35	가 나 다 라	166 120 92 79	107 78 58 49	150	170	195	의원	실비 (2등석)	30	가 나 다 라	145 95 70 62	81 59 44 37	130	155	180
구분				항공운임	일비	숙박비(1야) 및 식비(1일)			준비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등급	숙박비	식비			15일미만	15일이상 30일미만	30일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의장 부의장	1등정액	35	가 나 다 라	166 120 92 79	107 78 58 49	150	170	19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의원	2등정액	30	가 나 다 라	145 95 70 62	81 59 44 37	130	155	18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항공운임	일비	숙박비(1야) 및 식비(1일)			준비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등급	숙박비	식비	15일미만	15일이상 30일미만	30일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의장 부의장	실비 (1등석)	35	가 나 다 라	166 120 92 79	107 78 58 49	150	170	19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의원	실비 (2등석)	30	가 나 다 라	145 95 70 62	81 59 44 37	130	155	18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[별표 3]

국외여비 지급기준표(제7조 제2항 관련)

(단위 : 미불화)

구 분	항 공 운 입	일 비	숙박비(1야) 및 식비(1일)			준 비 금		
			등급	숙박비	식비	15일미만	15일이상 30일미만	30일이상
의 장 부 의 장	실비 (1등석)	35	가 나 다 라	166 120 92 79	107 78 58 49	150	170	195
의 원	실비 (2등석)	30	가 나 다 라	145 95 70 62	81 59 44 37	130	155	180

비고 국가 및 도시별 등급기준은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기준에 따른다.